

판석재 보링작업 중 회전하는 석재에 충돌



제조업

석재 자동 보링기를 사용하여 판석재 보링작업을 실시하던 중 판석재(두께 10cm)가 보링날과 함께 회전하자 자동 보링기를 멈추려고 접근하던 피재자가 작업장 바닥에 쌓여 있던 폐 석재에 걸려 넘어지며 회전하는 판석재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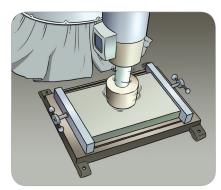


- 작업장 내 안전통로 미확보
 - 보링 작업 후 발생하는 폐 석재를 통로 상에 쌓아 두어 안전통로가 확보되지 않았음



1 가공물 고정 철저

- 작업대에 바이스(Vise)등 가공물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고속회전 가공
 작업 시 안전확보
- 2 작업장 내 안전통로 확보
 - 보링작업 등 석재가공작업 후 발생하는 폐자재를 작업장 외부로 반출 하여 안전통로 확보
- 가동정지스위치 설치
 - 급작스런 설비의 가동 중단이 필요한 경우 위험영역 밖에서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가동정지스위치를 별도로 설치



가공물 고정용 바이스 설치

送回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(통로의 설치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(원동기 ·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(기계의 동력차단장치) 등



딴석재 보링작업 중 회전하는 석재에 충돌

보링작업 시에는 가공물을 확실하게 고정하세요!

